

저작권 침해 소송을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

- 미국의 Righthaven 사례

박성민¹⁾

1. 들어가며

미국 Righthaven이라는 회사는 신문사 등으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아 그 저작권을 침해한 자에게 소를 제기하고 손해배상을 받거나 합의를 받아내서 그것을 원래 저작권자와 반분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한다. 2010년에 설립된 이 회사는 2011년 5월 현재까지 275개의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했다. 이러한 사업 모델은 특허에 관하여는 소위 특허 괴물(Patent Troll)의 문제로 이미 이슈가 된 바 있으나 저작권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논란이 된 것은 Righthaven이 처음이 아닌가 싶다. 이러한 Righthaven의 활동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주요한 영업 활동으로 하는 회사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려 한다.

2. Righthaven과 그 활동

Righthaven LLC는 2010년 초에 설립된 회사로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소송에서 이김으로써 손해배상을 받기도 하지만 합의를 통하여 수익을 얻기도 한다. Righthaven의 CEO는 Steven Gibson이라는 로펌 변호사라고 알려져 있다. 2011년 5월 초에도 Citadel와 Citadel의 라디오 토크쇼 진행자인 Matt Allen에게 합의를 받아낸 바 있다고 한다²⁾.

1)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제1기.

2)

Righthaven은 Stephen Media, Las Vegas Review-Journal, Denver Post^{t3)} 등으로부터 신문 기사 등의 저작물을 구입해서 그 저작물을 이용한 블로그들이나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 등에게 법정 손해 배상⁴⁾(statutory damages)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⁵⁾ 2010년 초 회사 설립 이후 2011년 1월 까지 205건 정도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며⁶⁾, 2011년 5월 현재까지는 275건을 제기했다고 한다⁷⁾. 보통 \$75,000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다고 하며⁸⁾ 상대방이 협상하려고 하면 그보다 다소 낮은 금액에서 협상액을 제시한다고 한다.

2011년 3월 Federal Judge가 Righthaven과 Stephen Media 사이의 Strategic Alliance Agreement의 내용의 일부를 밝혔는데 이에 따르면 Righthaven이 소송 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의 50%를 원래 저작권자인 Stephen Media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Righthaven이 제기한 소송의 상대방인 피고 대리인들은 저작물에 대한 권리가 분열되어 Righthaven에게는 원고적격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⁹⁾. 아직 그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http://www.vegasinc.com/news/2011/may/10/citadel-broadcasting-settles-righthaven-lawsuit/>

Righthaven은 2011년 2월 24일 Citadel과 Matt Allen이 허락없이 저작물인 사진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저작권 침해의 소를 제기하였다고 함.

3) Stephen Media, Las Vegas Review-Journal의 저작물은 회사 설립 당시부터 말아서 소를 제기하였으며 Denver Post의 저작물은 2010년 말에 받은 것으로 보임.

<http://www.lasvegassun.com/news/2010/dec/09/drudge-report-owner-sued-righthaven/>

4) 미국 연방저작권법 제504조(b)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i) 침해로 인하여 발생한 실제의 손해액과 (ii) 침해로 인한 것이면서 이러한 손해를 계산하는데 고려하지 않은 침해자의 이익을 배상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504조(c)(1)에 따르면 실손해액 및 이익 대신에 법정손해배상액을 선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Righthaven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며 누가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래 사이트에는 Righthaven이 제기한 소송들을 모아서 링크해두었음.

<http://www.righthavenlawsuits.com/lawsuits.html>

6) <http://ix23.com/righthaven-shakedown/righthaven-copyright-lawsuits.php/>

7)

<http://www.vegasinc.com/news/2011/may/10/citadel-broadcasting-settles-righthaven-lawsuit/>

8)

[http://www.wired.com/threatlevel/2010/08/copyright-troll-expanding/?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 wired%2Findex+\(Wired%3A+Index+3+\(Top+Stories+2\)\)#ixzz0yUtiRAUg](http://www.wired.com/threatlevel/2010/08/copyright-troll-expanding/?utm_source=feedburner&utm_medium=feed&utm_campaign=Feed%3A+ wired%2Findex+(Wired%3A+Index+3+(Top+Stories+2))#ixzz0yUtiRAUg)

9)

<http://www.vegasinc.com/news/2011/apr/15/judge-unseals-review-journalrighthaven-contract/>

보인다.

3. 그에 대한 평가

특허권을 이용해서 실제 사업은 하지 않고 특허 침해 소송과 같은 활동을 통해 수익을 내는 회사를 Patent Troll이라고 비하해서 말하는 것을 인용하여 Righthaven은 Copyright Troll이라고 하면서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하는 글들을 인터넷상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는 것다¹⁰⁾. 소송이 너무 많아지게 된다는 점, 소제기를 당한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송 비용과 승소 가능성을 고려하면 피고로서는 합의함으로써 일찍 분쟁을 종결하게 될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하는 입장에 수긍할 만한 점이 있다.

하지만 미국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패소하는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 등의 실제 소송비용의 상당부분을 용이하게 청구할 수 있는 점¹¹⁾을 고려하면 Righthaven으로부터 저작권 침해자로 지적받게 되는 피고가 가혹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사업 활동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좋은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Righthaven과 같은 사업자가 긍정적으로 역할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시사점

10)

<http://blogs.wsj.com/law/2010/09/03/vegas-baby-ruling-a-possible-boon-to-copyright-troll-suits/>, http://www.abajournal.com/news/article/attack-dog-group-buys-newspaper-copyrights-sue-s_86_websites/, <http://www.wired.com/threatlevel/tag/vdara-death-ray/>.

11)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변호사 비용에 관한 특칙이 없으나 미국 저작권법 제505조에서는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reasonable attorney's fee)을 부담시키도록 하고 있다. 과거 미국 법원은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경우와 피고 패소의 경우 변호사 비용에 관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dual standard approach)과 원고 패소든 피고 패소든 관계없다는 입장(evenhanded approach)으로 나뉘어져 있었으나, Fogerty v. Fantasy, Inc. 판결(Fogerty v. Fantasy, Inc., 510 U.S. 517 (1994))에서 미국 연방대법원이 후자의 입장을 택하였다. Dual standard approach는 원고 패소 시 피고가 원고에게 변호사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서 원고의 저작권 침해의 소 제기가 경솔한 것이었거나 약의에 의한 것이었음을 피고가 입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하여 원고가 패소한 경우나 승소한 경우에 상관없이 그런 입증을 요하지 않고 변호사 비용을 패소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는 것이 evenhanded approach인데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이를 택한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저작권 침해자에 대하여 형사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하여 논란이 된 바 있다. 한미 FTA이후 우리나라에서도 저작권 침해 시 법정 손해 배상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이며¹²⁾ 그럴 경우 우리나라에서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한 민사 소송을 통하여 Righthaven과 같은 형태로 수익을 추구하는 행위가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 보호와 공정 이용 사이의 균형이라는 저작권법의 목적을 위해 Righthaven과 같은 사업자의 활동에 대하여 규범적으로 어떤 대처를 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12) 저작권위원회 자료, 저작권법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실무TF 최종보고서, 29면 참조.
http://www.google.co.kr/url?sa=t&source=web&cd=3&ved=0CDwQFjAC&url=http%3A%2F%2Fwww.copyright.or.kr%2Fcommon%2FbbsFileDownload.do%3Fbd_seq%3D8029%26bf_idx%3D1&rct=j&q=%ED%95%9C%EB%AF%B8%20FTA%20%EC%A0%80%EC%9E%91%EA%B6%8C%20%EB%B2%95%EC%A0%95%20%EC%86%90%ED%95%B4&ei=19vMTcrVEof0vQON5bm4Cg&usg=AFQjCNE3Z9elO2GncP-bSLMyph_rYh3zHw&cad=rjt